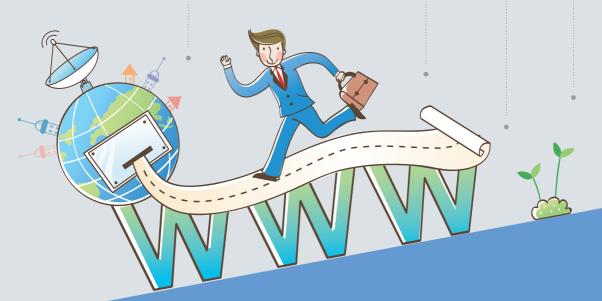
e

FTA · 일반특혜

程化对증明서 化物、整设 全部川 叶子子

2013. 2.





FTA·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 독립개 따라라하기

발간사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현재 아세안, EU, 미국 등 45개국과 8개 협정이 발효되어 있으며, 터키, 콜롬비아와의 FTA도 협상이 타결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을 비롯한 여러국가와도 공식적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이내에 대부분의 교역이 FTA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FTA 무역체제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기 위해서는 FTA 활용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수출하기 위해서는 협정별로 복잡·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품에 대한 원재료 내역 등 각종 근거 서류가 필요하고 동 서류들을 일정기간 보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협정과 다르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로 인해 상대국 세관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 실무자들이 좀 더 쉽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FTA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 · 발급 손쉽게 따라하기」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기업 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설명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절차는 따라하기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수출기업, 관세사 등 FTA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FTA활용의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 3.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박 철 구



Contents

- 1. 막둥이가 안내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1
- 2. 원산지증명서 신청 · 19
 - 1) UNI-PASS 이용 신청하기 · 20
 - 2) 원산지증명서 신청화면 들어가기 · 21
- 3. FTA 원산지증명서 공통사항·란사항·23
 - 1) 원산지증명 공통사항 상세보기 · 24
 - 2) 원산지증명 란사항 상세보기 ·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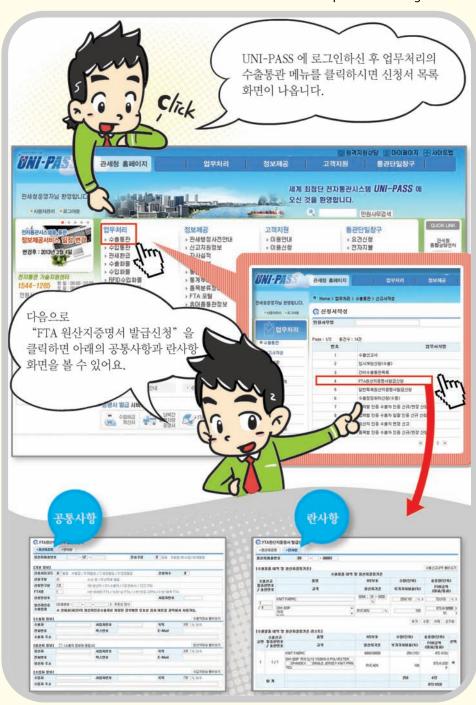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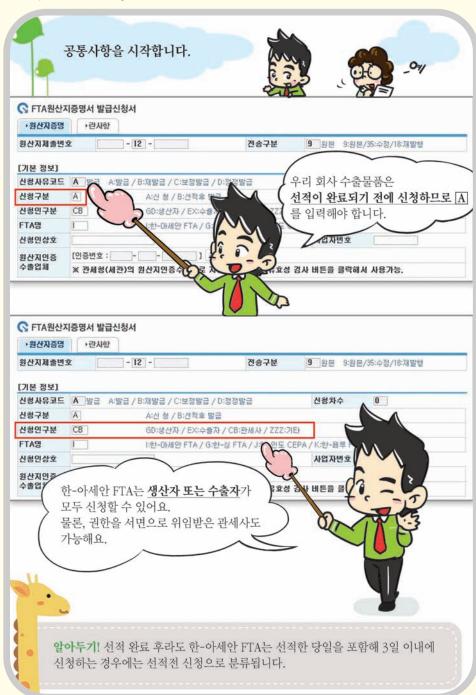
Contents

- 4.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공통사항·란사항·49
 - 1) 원산지증명 공통사항 상세보기 · 50
 - 2) 원산지증명 란사항 상세보기 · 63
- 5. FTA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추가기능 · 71
 - 1) 재발급 · 정정발급 · 보정발급 신청하기 · 72
 - 2) 원산지증명서 출력하기 · 78
 -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 81
- 6. 각종 원산지증명서 서식보기 · 85
 - 1)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 86
 - 2)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 ·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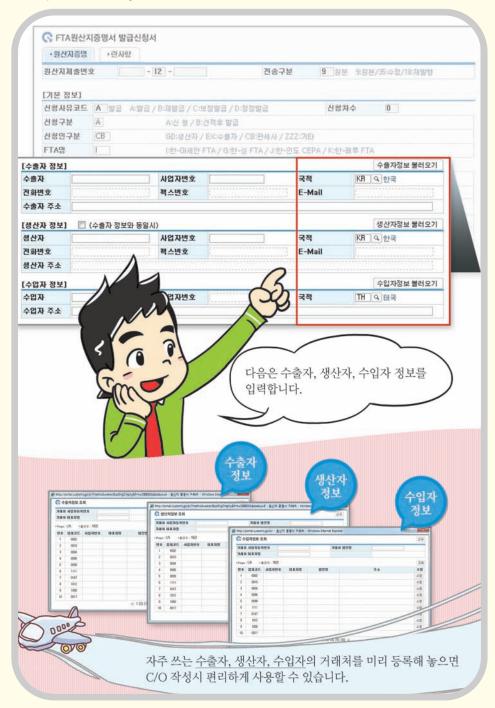
마루이가 아는내하는 원사는지증명서 발급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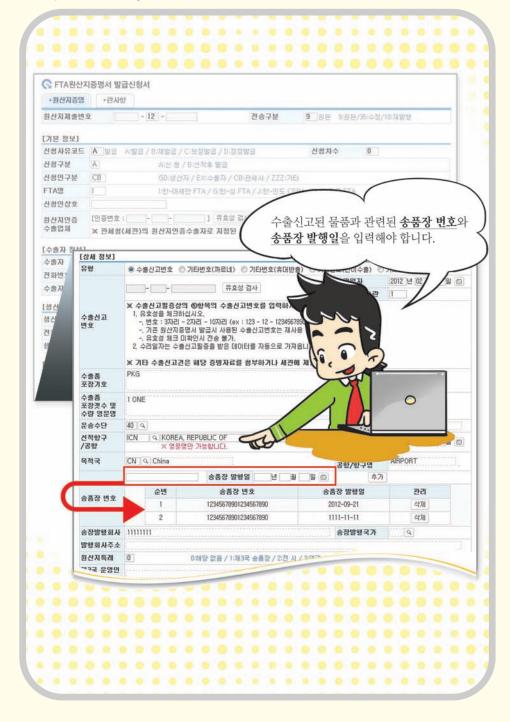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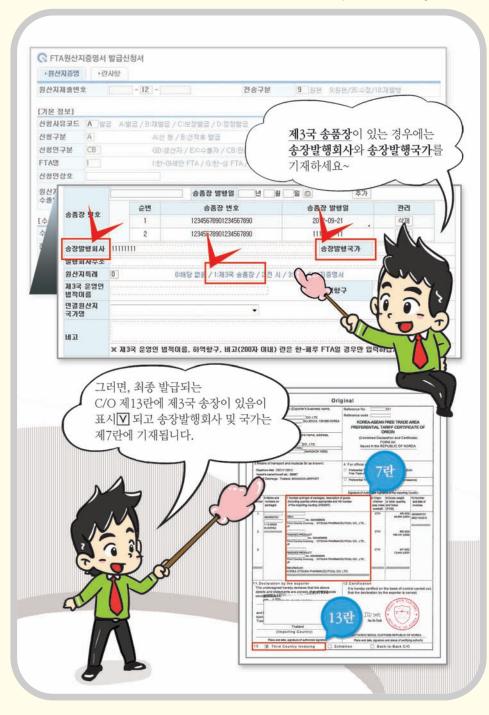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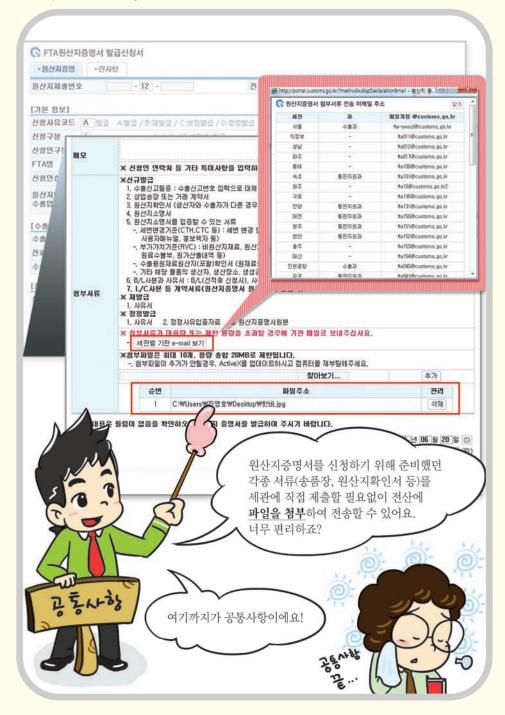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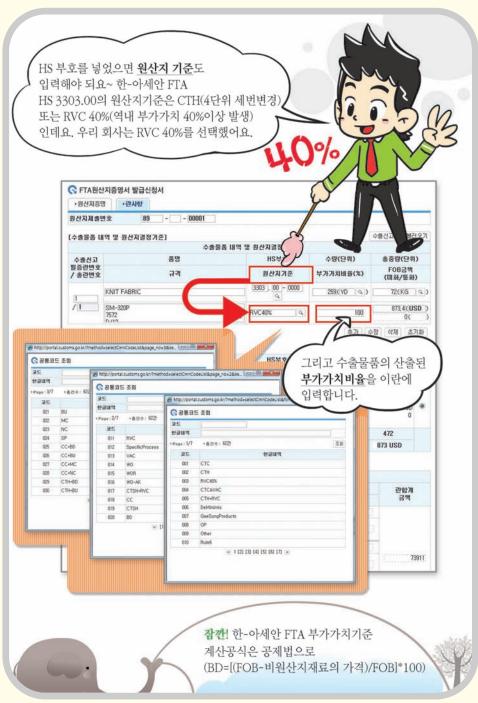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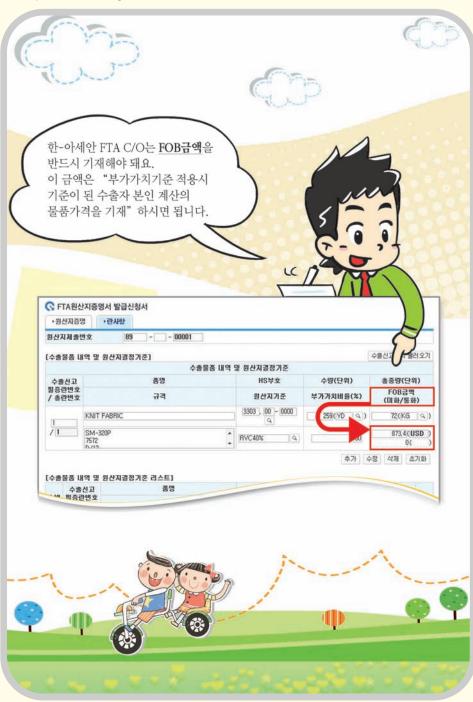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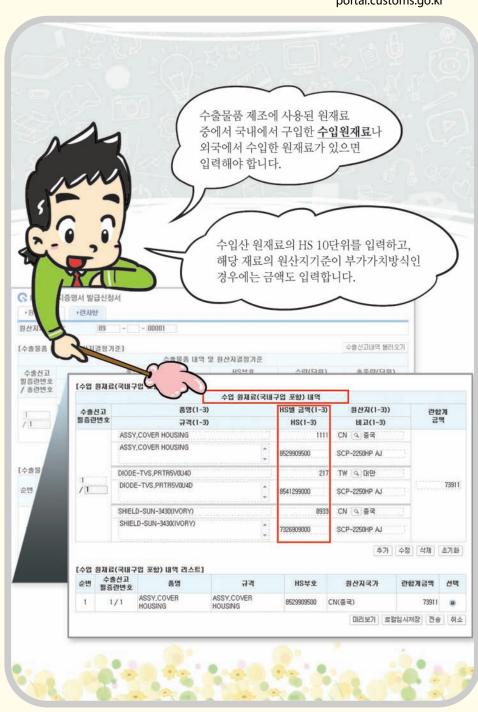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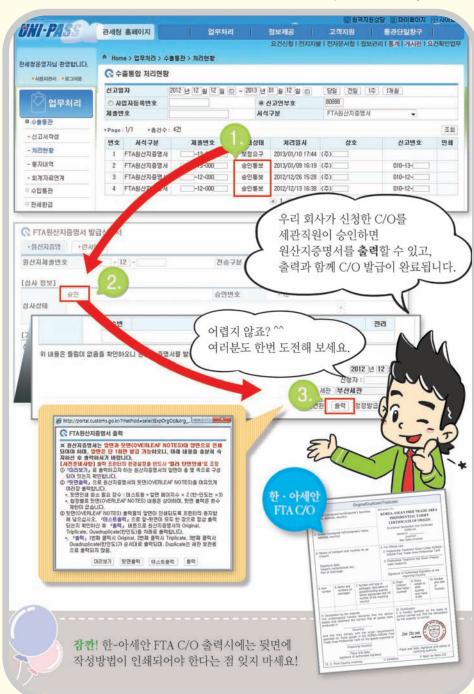
















1) UNI-PASS 이용 신청하기	20
2) 원산지증명서 신청화면 들어가기	21

2. 원산지증명서 신청

1) UNI-PASS 이용 신청하기















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 UNI-PASS 사용자 안내서는 http://portal_customs.go.kr 〉 QUICK LINK 하단 〉 사용자 안내서를 e-book 또는 PDF 파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신청화면 들어가기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위한 통관포탈 접근 방법

☑ UNI-PASS 로그인 〉업무처리 〉수출통관 〉신고서 작성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 신청



13 Part

FTA 원산지증터서 공통사항·간사항



1) 원산지증명 공통사항 상세보기 24

2) 원산지증명 란사항 상세보기 39

3. FTA 원산지증명서 공통사항·란사항

1) 원산지증명 공통사항 상세보기



공통사항 전체화면



공통사항 1-3.

G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증명	→ 라사항			
원산지제출변	- 12 -	전송구분	9 원본 9:원본	/35:수정/18:재발행 2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A 발급 A:발급 / B:재발급 / C:보정발	급 / D:정정발급	신청차수	0 8
신청구분	A:신 청 / B:선적후 발급			
신청인구분	CB GD:생산자 / EX:수출자 / CB:관세사 / ZZZ:기타			
FTA명	I:한-마세안 FTA / G:한-심 FTA / J:한-인도 CEPA / K:한-페루 FTA			
신청민상호			사업자번호	
원산지인증 수출업체	[인증번호:]	유효성 검사		
	※ 관세청(세관)의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성 검사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가능.			
[수출자 정보]				수출자정보 불러오기
수출자	사업자번호		국적	KR Q 한국

1 … 원산지제출번호

- 원산지제출번호는 CO 발급 신청시 자동 생성되나, 최종 CO 발급번호와 다릅니다.
 - 원산지제출번호 : 신고인부호(5)+연도(2)+일런번호(7)
 - 원산지증명번호 : 세관(3)+과(2)+일런번호(5)

2 … 전송구분

- 9 : 원본 → 신규발급신청(A)
- \circ 35 : 수정 ightarrow 보정발급신청(C), 정정발급신청(D)
- 18 : 재발행 → 재발급신청(B)

❸ ⋯ 신청차수

○ 신청차수는 최초 제출의 경우 0으로 자동 부여되고, 정정이나 재발급시마다 1 차수씩 올라갑니다.

공통사항 4-5.

→원산지증명	기증명서 발급신청서 → 란사항		
원산지제출변3	ž -11 -	전송구분	35 원본 9:원본/35:수정/18:재발행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D 발급 A:발급 / B:재발급 / C:보정발급 / D:정	벙정발급	신청차수 1
사유	111		<u> </u> 4
신청구분	A:신 청 / B:선적후 발급	6	
신청민구분	EX GD:생산자 / EX:수출자 / CB:관세사 / ZZZ:기타		
FTA명	I:한-아세안 FTA / G:한-상 FTA / J:한-인도 CEPA / K:한-페루 FTA		
신청인상호			사업자번호
원산지민증	[인증변호 :] 유효성 검사		
수출업체			검사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가능.

4 … 사유

○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신청시에 해당란에 사유를 입력하면, 사유서 제출은 생략되나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6 … 신청구분

- A : 신청(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 □ 단, 다음의 경우에는 선적전 신청 : A로 분류
 - · 한-아세안 FTA : 선적한 당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신청시(공휴일, 주말 제외)
 - \cdot 한-인도 CEPA :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신청시
- B : 선적후 발급(선적이 완료된 이후 신청, 예외사항 제외)
 -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C/O상 소급발급 문구를 날인하여 발급합니다.
 - 한 · 싱 : 15번 항목, 한 · 아세안 : 12번 항목, 한 · 인도 : 6번 항목





▲ 하-아세아 FTA

▲ 한-인도 CEP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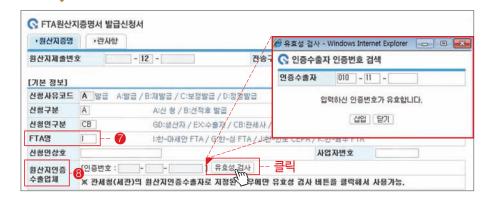
공통사항 6.



6 … 신청인구분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싱 FTA, 한-페루 FTA
생산자 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 포함)	수출자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포함)

공통사항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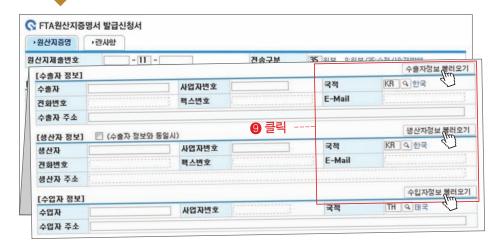
7 ··· FTA명

- 한-아세안 FTA 대상 10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 싱가포르는 한-싱과 한-아세안 FTA 협정국으로 각 협정상 C/O가 다르므로 선택한 협정에 맞는 C/O를 신청해야 합니다.
- 한-페루 FTA: 협정 발효일부터 5년이 지난 2016.8.1부터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③ ··· 원산지인증수출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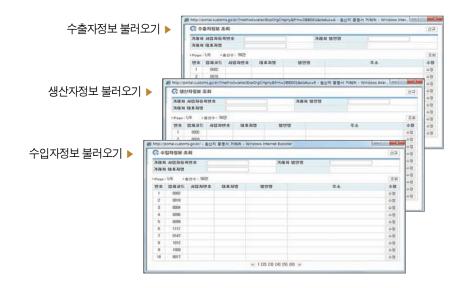
-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각종 첨부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모든 첨부서류 제출 생략은 아니므로 선적 후 C/O 신청시에는 B/L 사본 또는 사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성 검사 버튼을 클릭시, 세관에서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 입력한 인증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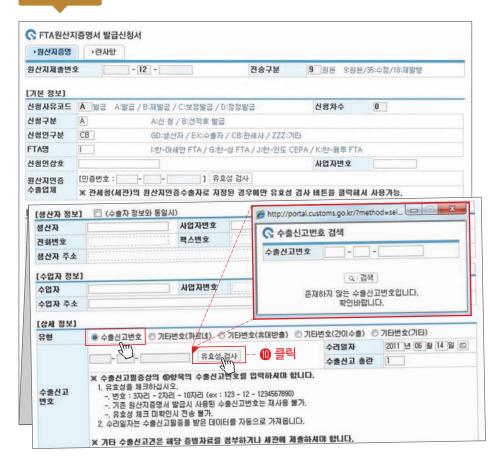


⑨ ··· 수출자 · 생산자 · 수입자 정보 불러오기

o 자주 쓰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 놓고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10.



🛈 … 수출 증빙자료로서 수출신고번호 선택

- 유효한 수출신고번호(3자리-2자리-10자리)를 입력하면 수리일자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 유효성 검사 버튼을 클릭시, 수출신고서의 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C/O가 있어도 체크결과가 유효하나, 란이 1개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C/O가 있으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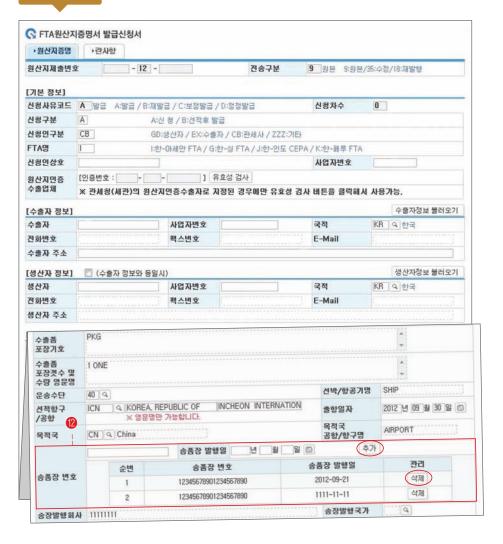
공통사항 11.

▶원산지증명) 란,	사항							
원산지제출변회	Ž.		- 12 -		전송구분	9 원본 9:원	본/35:수정	/18:재발행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A 발	A:발:	급 / B:재발급 /	/ C:보정발급 / I	D:정정발급	신청차수	0		
신청구분	A		A:신 청	/ B:선적후 발급					
신청인구분	CB	CB GD:생산자 / EX:수출자 / CB:관세사 / ZZZ:기타							
TAB			1:et-01/	#안 FTA / G:한	-상 FTA / J:한-인도 C	EPA / K:한-페루 FT	A		
신청인상호	사업자변호								
원산지인증	[인증번:	호 :] A3	호성 검사				
수출업체	※ 관세	청(세관	의 원산지인	증수출자로 지?	정된 경우에만 유효성	검사 배트용 클릭하	בשת או	II has	
[상세 정보]								(기E) 11	
유형	0 4	출신고변	호 이 기타변	[호(까르네) @	기타변호(휴대반출)	기타변호(간미수함수리일자		012년 02월 29일 @	
		10/107/156	4548471541541	54174	수출신고		012 2 02 2 20 2		
	5487	1040(400				구절인보	20 E		
	0.101		1 T HOL 64	무이 스츠시크	배종은 이러워되다 ㅎ	HILF			
기타변호 (까르네)	× ↔ 1.	출 신고 유효성을 -, 변호 : -, 기존 원 -, 유효성 수리일지	체크하십시오 3자리 - 2자리 실산지증명서 빌 체크 미확인시 는 수출신고필	- 10자리 (ex : 라급시 사용된 수 I 전송 불가. 증을 받은 데이!	변호를 입력하셔야 할 123 - 12 - 1234567890) 출신고변호는 재사용 될 대를 자동으로 가져옵니 첨부하거나 세관에 제	#7k. Ck.			

🛈 … 수출 증빙자료로서 각종 기타번호 선택

-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가 아닌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신고건은 해당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 휴대반출신고서, 간이수출신고서
 - ㆍ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ㆍ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 우편물 ·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 ·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증빙 자료 등
- 기타의 수출신고건은 숫자로 30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하나, 유효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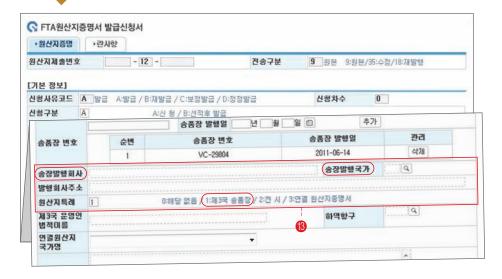
공통사항 12.



12 … 송품장 번호

○ 송품장 추가 버튼을 누르면 최대 999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공통사항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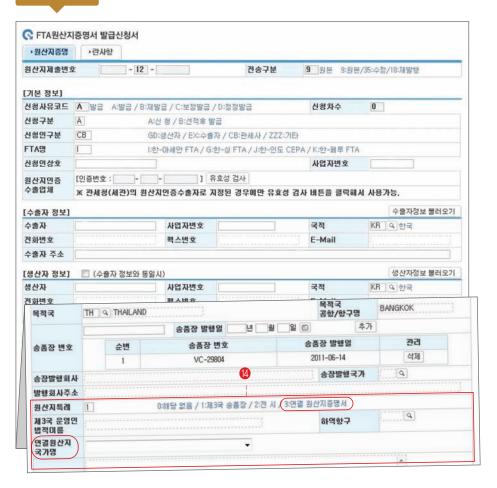
③ ··· 원산지특례 1:제3국 송품장

- 기관발급 대상 FTA C/O는 모두 제3국 송품장을 인정하나, 한-아세안 FTA와 한-인도 CEPA는 C/O 상에 "제3국 송장" 임을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C/O신청시 원산지특례에 ①를 입력하고 송장 발행회사와 송장발행국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제3국 송품장이 다수에 의해 발행된 경우 수출자 본인이 확보한 최종 제3국 송품장 정보(회사, 국가 등)를 기재하면 됩니다.



- 한-아세안 FTA C/O: 제13란 "제3국 송장" 란에 (▽) 표시되고 송장을 발행
 화 회사의 이름 및 국가정보는 제7란에 기재
- 한-인도 CEPA C/O: 제14란에 "제3국 송장"란에 (▽) 표시되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 또는 운영인의 이름 · 주소 및 국가 등의 정보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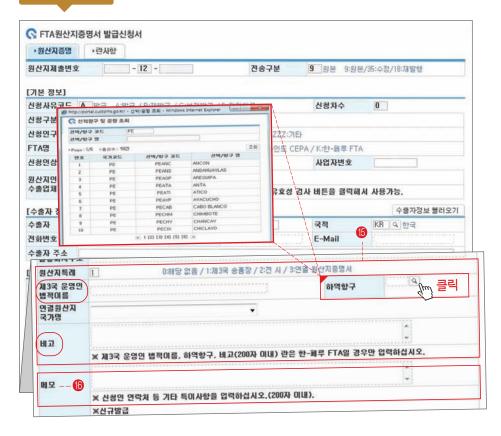
공통사항 14.



🐠 … 원산지특례 3:연결 원산지증명서

○ 한-아세안 FTA는 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원산지특례에 ③을 입력하고 연결원산지국가명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결원산지국가명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즉 필수항목으로 국가명을 선택해야 다음 절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15-16.



🚯 … 제3국 운영인 법적이름, 하역항구, 비고

○ 제3국 운영인 법적이름, 하역항구, 비고(200자 이내) 란은 한-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에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6 … 메모

○ 메모란에는 신청인이 세관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특이사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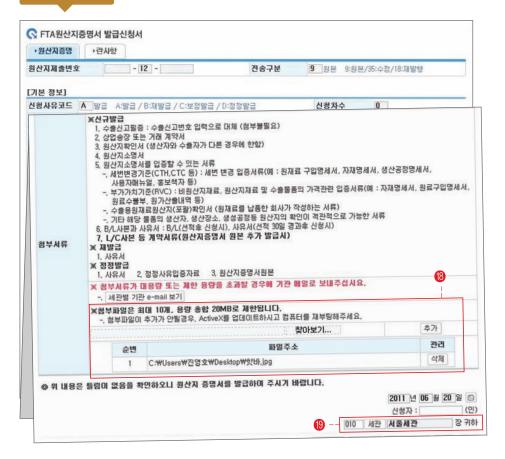
₩ … 첨부서류 세관 전송

○ 첨부서류 용량이 너무 크거나, 첨부가 불가능한 유형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의 e-mail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세관별 기관 이메일 주소

46개 세관	과	메일계정 @customs.go.kr
서울	FTA 4과	fta010@customs.go.kr
의정부	-	fta011@customs.go.kr
성남	-	fta012@customs.go.kr
파주	-	fta017@customs.go.kr
동해	-	fta100@customs.go.kr
속초	통관지원과	fta101@customs.go.kr
원주	-	fta102@customs.go.kr
구로	-	fta130@customs.go.kr
안양	통관지원과	fta131@customs.go.kr
대전	통관지원과	fta150@customs.go.kr
청주	통관지원과	fta151@customs.go.kr
천안	통관지원과	fta152@customs.go.kr
충주	-	fta153@customs.go.kr
대산	-	fta154@customs.go.kr
인천공항	수출과	fta040@customs.go.kr
김포	통관지원과	fta041@customs.go.kr
인천공항 국제우편	우편통관과	fta013@customs.go.kr
부산	FTA과	fta030@customs.go.kr
양산	통관지원과	fta033@customs.go.kr
사상	-	fta035@customs.go.kr
부산국제우편	-	fta037@customs.go.kr
용당	-	fta039@customs.go.kr
마산	통관지원과	fta050@customs.go.kr
거제	통관지원과	fta051@customs.go.kr
사천	-	fta052@customs.go.kr
창원	통관지원과	fta053@customs.go.kr
통영	-	fta054@customs.go.kr
진주	-	fta056@customs.go.kr
김해	통관지원과	fta140@customs.go.kr
인천	FTA 1과	fta020@customs.go.kr
안산	통관지원과	fta014@customs.go.kr
수원	통관지원과	fta021@customs.go.kr
부평	-	fta023@customs.go.kr
대구	FTA과	fta120@customs.go.kr
울산	통관지원과	fta110@customs.go.kr
구미	통관지원과	fta121@customs.go.kr
포항	통관지원과	fta122@customs.go.kr
광주	통관지원과	fta071@customs.go.kr
여수	통관지원과	fta060@customs.go.kr
광양	통관지원과	fta062@customs.go.kr
목포	통관지원과	fta070@customs.go.kr
군산	통관지원과	fta080@customs.go.kr
익산	-	fta081@customs.go.kr
전주	-	fta082@customs.go.kr
제주	통관지원과	fta090@customs.go.kr
평택	통관지원과	fta016@customs.go.kr

공통사항 18-19.



🔞 … 첨부서류 용량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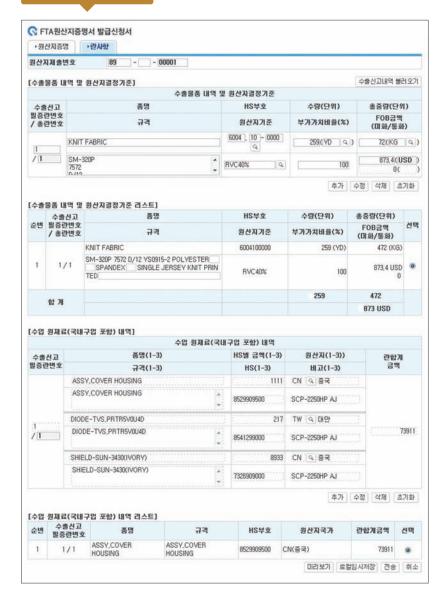
 첨부서류는 최대 20M까지 첨부할 수 있고, 첨부가 가능한 유형은 hwp, jpg, gif, zip, pdf, doc입니다.

19 … 신청 세관 선택

○ 신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관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원산지증명 란사항 상세보기

란사항 전체화면



란사항 1.



● ··· 수출물품 내역 등록 · 수정 · 삭제

- C/O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물품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물품 내역을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할 순번을 선택하면 상단에 해당란이 조회되고 상단에서 수정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수출물품 내역 중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할 순번을 선택하면 상단에 해당란이 조회되고 상단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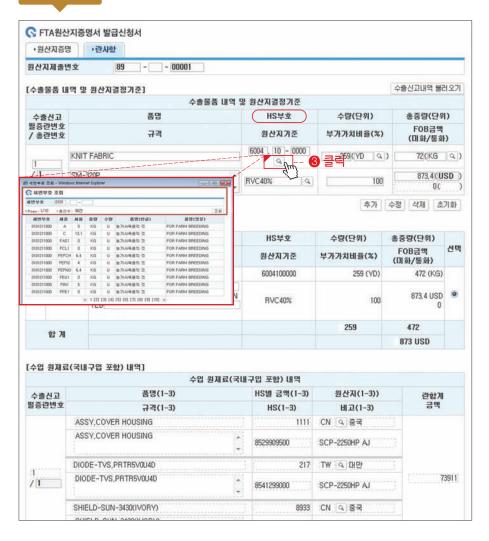
란사항 2.



② … 수출신고내역 불러오기

- o 공통사항 중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한 건은 수출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즉, 품명·규격·수량·단위·FOB금액(미화/통화)을 란별로 조회할 수 있고, C/O 신청하고자 하는 란과 품명 등을 클릭하면 입력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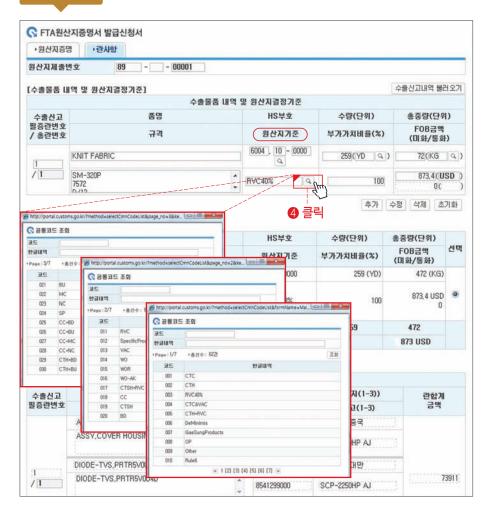
란사항 3.



❸ ··· HS 부호 입력

○ 수출물품의 HS부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출품목의 6단위 HS부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란사항 4.



4 … 원산지기준

-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코드표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FTA C/O상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은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결정기준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코드명	원산지 결정기준(Origin Criterion)	코드명	원산지 결정기준(Origin Criterion)
001	СТС	033	CTSH + BD
002	СТН	034	CTSH + BU
003	RVC 40%	035	CTSH + MC
004	CTC & VAC	036	CTSH + NC
005	CTH + RVC	037	CTC + Specific Process
006	De Minimis	038	CTSH + RVC 35%
007	GaeSung Products	039	PSR
800	OP	040	PSR BD
009	Other	041	PSR BU
010	Rule 6	042	RVC 40% + WO-AK
011	RVC	043	CTH + RVC 25%
012	Specific Process	044	RVC 35%
013	VAC	045	RVC 45%
014	WO	046	RVC 50%
015	WOR	047	RVC 60%
016	WO-AK	048	RVC 60% + WO-AK
017	CTSH + RVC	049	RVC 70%
018	CC	050	CTC + WO-AK + Specific Processes
019	CTSH	051	CTC + WO-AK
020	BD	052	CTC + RVC 55%
021	BU	053	CTC + RVC 40%
022	MC	054	CTH + RVC 40%
023	NC	055	CTH + RVC 35%
024	SP	056	CC + RVC 25%
025	CC + BD	057	CTSH + RVC 40%
026	CC + BU	058	CTH + RVC 30%
027	CC + MC	059	CC + RVC 40%
028	CC + NC	060	CTSH + RVC 25%
029	CTH + BD	061	CTSH + RVC 50%
030	CTH + BU	062	CTH + RVC 50%
031	CTH + MC	063	CTC + WO
032	CTH + NC		

란사항 5



6 ··· 부가가치비율(%)

- 협정별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 수출물품의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입력합니다.
- 한-아세안 FTA는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의거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공제법(BD=[(FOB-비원산지재료의 가격)/FOB]*100)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비율을 산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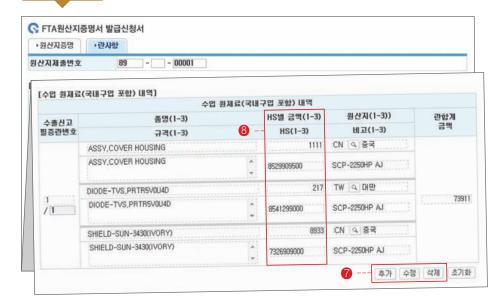
란사항 6.



⑥ ··· FOB 금액(미화/통화)

- C/O상 란별 FOB 금액(미화)은 수출신고서 제33란의 란별 FOB금액(미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C/O 신청하는 품목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의 C/O는 FOB 금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국 송품장 발행이 다수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FOB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한-아세안 FTA C/O 제9란의 FOB 금액은 '부가가치기준 적용시 기준이 된 수출자 본인 계산의 물품가격을 기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란사항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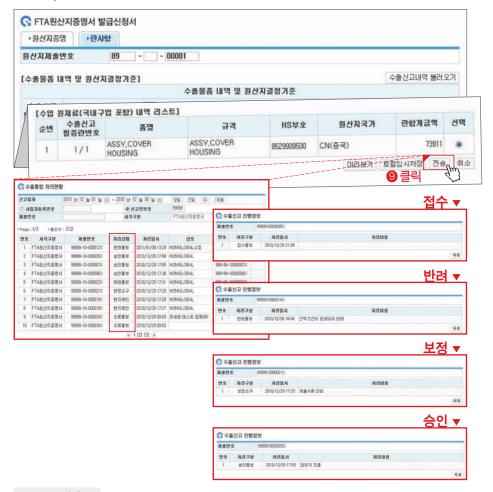


- 국내에서 구입한 수입원재료나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등록하거나 수정 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원재료 내역을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할 순번을 선택하면 상단에 해당란 이 조회되고 상단에서 수정 후 수정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수입원재료 내역 중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할 순번을 선택하면 상단에 해당란이 조회되고 상단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❸ ··· 수입원재료 HS별 금액 및 HS부호 입력

수입산 원재료의 HS별 금액은 해당 재료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방식인
 경우에 입력하고, HS부호는 10단위까지 기재합니다.

란사항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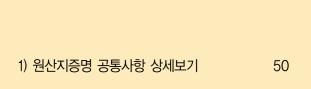


9 ··· 전송

-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해 공통사항 및 란사항 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세관으로 전송이 됩니다.
- 전송한 후에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수출통합처리현황에서 각각의 제출 번호별로 접수, 반려, 보정, 승인, 오류 등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는 하는 원사자들 명사 공통사항· 관사항

Part



63

2) 원산지증명 란사항 상세보기

4.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공통사항·란사항

1) 원산지증명 공통사항 상세보기

-88782	-0.00	1					
自世科和自世界	t i	+[12]+		건승구보	9 88 988/	35-0 U/10-78WU	
78 8KI					- Name of the last	12.011	
HHARRE			S\CHBMS\		世世界中	0	
945.86 445.886	(B)		個/日世和申留日 中国内/CB/BMA				
世界高田	1			CUN GSTP / D:SATT /	E-ADTAL TRACTOR	(7.20)	
#27M	200		WHINT DANSE Y	CONTRACT LANGUITY	Name o	r cintr	
					MIGNER		
수병자 변보] 수병자			사업자변호		izm	中華特別出 開刊至7 第第二年 世刊	
が対性を			可点性食		E-Mail	60.3.3.4.4.	
金章 好意							
HER BYI	E (48	ひ 世世史 田田人	n			생산자장보 불러요기	
102			사업자연호		वय	M PAR	
対対性な			利力担全		E-Mail		
1世界 卒业							
						Colorado a Mario de S	
수업자 전보1 수업자			사업자변호		44	수입자함보 불러보기 #R 및 한국	
0日日日本			Heren J				
#3為學問	To Orda	r					
SM SM							
141	0.9802	252 × 200	2(NEUS) 0.7(EMP(ADMB) 07E			
	5487404874	56454047154154	54174		수업되자 수홍선과 유한	DELAMER DE MONTO	
RE)世史 美征(1)	1、日全日 ・日本 ・刀の ・日本 ・日本 ・日本	를 체크하십시오 : 3자리 - 2자리 원산자유했서 1 성 체크 대학인/ 자는 수출산교통	- 10자전 (ext : 123 1건시 사용된 수홍선 1 건송 발가, 음을 받은 GIOISIS	(고반호는 재사용 불가 자동으로 가져줍니다)			
288	× 기타 수송신고간은 해당 중행자리의 정부하거나 세찬에 제송하셔야 합니다. PACE						
2575							
・ 商品 を改更 4 位 の日 日記日	1017						
PARA	A BUN					UT 14 BAB DWB1	
12003	EK88/PD P 0						
변착함구 r공합	ICN 14 KOREA REPUBLIC OF INCHEON INTERNATION AND IN					DIE MITHER DE	
ena .	ON 4 0	HNA			의적국 공학/항구별		
F81	(9)				887878		
			020 248	H B B C	0.79		
180.158	6	215	080 158		80 343	pa	
BRANK	0	1	123456		2012-12-31	1638	
BYAG	1. 自然 2. 2. 2. 2. 2. 2. 2. 2. 2. 2. 2. 2. 2.	図報号・0番性 参 年 1 で 4 で 1 で 1 で 1 で 1 で 1 で 1 で 1 で 1 で	대가 함) 생원선지목로, 원 생원선지목로, 원 보내역 함) 포함 자연선 (원칙 보기 생산장소, 영화 (신격육 선천장소, 영화 (신격육 선천장소, 영화 (신격육 선천장소, 영화 (신격육 선천장소, 영화 (설립 및 원선정보 호 기 (배연 전경보 소 (배연 전경보 소 (배연 전경보 소 (배연 전경보 선천)	이 한다) 한문사로(제: 설계로 구기 건경보고 및 소용표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국한한 합문서위(제 는 서류) 대한민으로 가능한 서 대한지() 보험지() 보험지() 보험대() 보험대() 보험대() 보험대() 보험대() 보험대()	双祖堂相相,各森子位世相从	
	ego ga	S NYMEN	88A 68A6 1	11111H TAR 101651	3.		
9 H H H E 1							
o 9 u 82 1					810 T MD	2012 년 12 월 17 일 선명자 : 관세학문양자 서울세만 21	

공통사항 전체화면



공통사항 1-3.

+원산지증명	+ 란사항				
원산지제출번:	Ž.	- 12	전송구분	9 원본 9:원론	1/35:수정/18:재발행 2
[기본 정보]	_				
신청사유코드	A 발급 A:	발급 / B:재발급 / C:보정발급	급 / D:정정발급	신청차수	<u> </u>
신청구분	A	A:신 청 / B:선적후			
신청민구분	CB	EX:수출자 / CB:관			
원산지증명 발급구분	E	A:남북교역 / B:GS	P / C:UN GSTP / D:GATT	「/E:APTA(구ESCAP) / Z:7IEI
				사업자변호	

❶ ⋯ 원산지제출번호

- 원산지제출번호는 CO 발급 신청시 자동 생성되나, 최종 CO 발급번호와 다릅니다.
 - 원산지제출번호 : 신고인부호(5)+연도(2)+일런번호(7)
 - 원산지증명번호 : 세관(3)+과(2)+일런번호(5)

2 … 전송구분

- 9 : 원본 → 신규발급신청(A)
- 35 : 수정 → 보정발급신청(C), 정정발급신청(D)
- 18 : 재발행 → 재발급신청(B)

❸ ⋯ 신청차수

○ 신청차수는 최초제출의 경우 0으로 자동 부여되고, 정정이나 재발급시마다 1 차수씩 올라갑니다.

공통사항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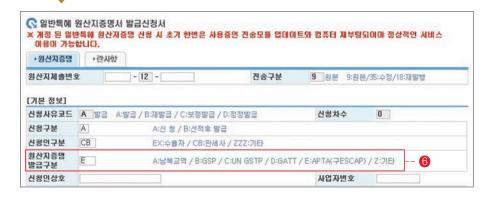
4 … 사유

○ 재발급 또는 정정발급 신청시에 해당란에 사유를 입력하면, 사유서 제출은 생략되나 관련 증빙자료는 제출해야 합니다.

⑤ ⋯ 신청인구분

○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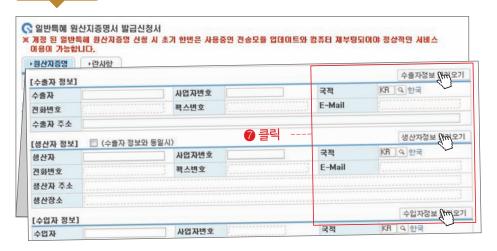
6 … 원산지증명 발급구분

- 이 항목에 따라 최종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달라지므로, 발행코드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 A: 남북교역(남북교역물품, 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 B: GSP(GSP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 C: UN GSTP(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양허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D: GATT TNDC(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 양허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E: APTA(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Z: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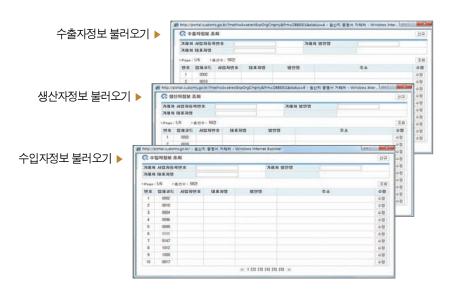
▶ 협정별 적용대상국가

협정	UN GSTP(45개국)	GATT TNDC(13개국)	APTA(6개국)
회원 국가	한국,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안마, 방글라데시, 페루, 쿠바, 니카라구아,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아, 수단, 기네아, 빠난, 모잠비크, 탄자니아, 이라크, 이집트, 이란, 우루과이, 파라과이	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터키, 멕시코, 브라질, 칠레, 페 루, 우루과이, 이집트, 이스라 엘, 튀니지, 루마니아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 데시, 라오스

공통사항 7.



○ 자주 쓰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의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 놓고 원산지 증명서 작성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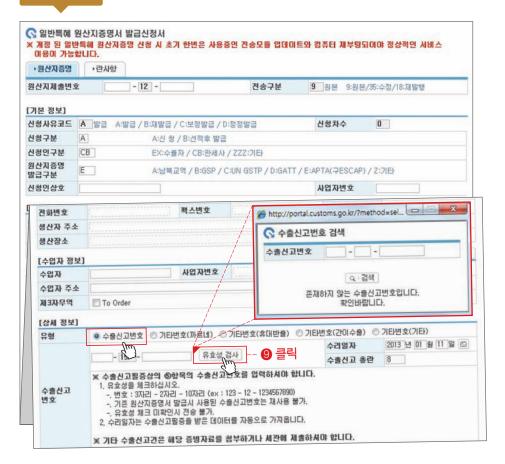
공통사항 8.

·원산지증명	• 란사항							
원산지제출번호	Ž	- 12 -	전송구분	9 원본 9:원본/3	5:수정/18:재발행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A 발급 A:발급	: / B:재발급 / C:보정발급 / D:	정정발급	신청차수	0			
신청구분	A	A:신 청 / B:선적후 발급						
신청인구분	СВ	CB EX:今舎						
변산지증명 발급구분	E	A:남북교역 / B:GSP / C	:UN GSTP / D:GATT	/E:APTA(PESCAP)/	Z:기타			
신청민상호				사업자번호				
수출자 정보]					수출자정보 불러오기			
소출자		사업자변호		구전	KR O ALT			
생산장소								
[수업자 정보	2)				수입자정보 불러오			
수입자		사업자변호		국적	KR Q 한국			
수업자 주소								
제3자무역	▼ To Order	8						
[상세 정보]								
유형	수출신고반	호 ③ 기타번호(까르네) ② :	기타변호(휴대반출)		기타변호(기타)			
	C407404074CC	154847154154154174		수리일자	2012 년 02 월 29 일 ⓒ			
	0.101.101.110			수출신고 총린	1			
기타변호 (까르네)	1. 유효성을 -, 변호 : -, 기존 원	월 증상의 ⑥항목의 수출신고변 체크하십시오. 3자리 - 2자리 - 10자리 (ex : 1½ 산지증명서 발급시 사용된 수출 체크 미확인시 전송 불가.	23 - 12 - 1234567890)					

③ ··· **수입자 정보** 〉 제3자무역 (To Order 체크된 경우)

- APTA(아태 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성명과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 성명이 상이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수입자란에 "주문용(To Order)" 을 기입하여 제3자무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단, 협정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일방 참가국으로부터 타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되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9



⑨ … 수출 증빙자료로서 수출신고번호 선택

- 유효한 수출신고번호(3자리-2자리-10자리)를 입력하면 수리일자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 유효성 검사 버튼을 클릭시, 수출신고서의 란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C/O가 있어도 체크결과가 유효하나, 란이 1개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C/O가 있으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공통사항 10.

+원산지증명	→란사항							
발산지제출변 3	Ž	- 12 -	전송구분	9 원본 9:원본	P/35:수정/18:재발행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A 발급 A:발	급 / B:재발급 / C:보정발급	/ D:정정발급	신청차수	0			
년청구분	A	A:신 청 / B:선적후 팀	발급					
신청인구분	СВ	CB						
발산지증명 말급구분	E	A:남북교역 / B:GSP	/ C:UN GSTP / D:GATT	/E:APTA(⊋ESCAP) / Z:7(E)			
년청민상호				полне				
[상세 정보]								
[상세 정보] 유형	수출신고	변호 (파르네)	기타번호(휴대반출)	기타번호(간이수출	○ 기타변호(기타) ①			
	수출신고		기타번호(휴대반출)	기타변호(간이수출 수리일자	기타변호(기타) - 10 2012 년 02 월 29 일 (1			
	○ 수출신고 548748487456	6454847154154154174		수리일자 수출신고 #	2012 년 02 월 29 일 @			
	○ 수출신고 548748487456 ※ 수출신고 1, 유효성을 -, 변호: -, 기존: -, 유효성 2, 수리일자		고변호를 입력하셔야 합(: 123 - 12 - 1234567890) 수울신고변호는 재사용 불: 미터를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수건열자 수출신고 8 JIC. 가.	2012 년 02 월 29 일 @			

⑩ ⋯ 수출 증빙자료로서 각종 기타번호 선택

-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가 아닌 수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신고건은 해당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하거나 세관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 휴대반출신고서, 간이수출신고서
 - ㆍ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ㆍ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cdot 우편물 \cdot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 \cdot 선하증권 사본 또는 수출증빙 자료 등
- 기타의 수출신고건은 숫자로 30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하나, 유효성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통사항 11.



🛈 … 송품장 번호

- 송품장 추가 버튼을 누르면 최대 999개까지 입력할 수 있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 신청서에 첨부된 송품장 발행일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됩니다.

공통사항 12.

산지제출번:	Ž		- 12	2 -			전송구분		9 원본	9:원본	/35:수정	성/18:재발행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A g	⊒ A:	발급 / F	3:재발	급 / C:보정발:	급 / D:정정	발급		신청차-	^	0		
신청구분	Α	A:신 청 / B:선적후 발급											
신청민구분	СВ			EX:	수출자 / CB:관	세사/22	Z:7IEF						
원산지증명 발급구분	E			A:H	북교역 / B:GS	P/C:UN	GSTP / D:0	ATT/E	:APTA(7E	SCAP	/ Z:7I	Eł	
신청인상호									사업자	변호			
수출자 정보]												수출자정보	분 불러오기
수출자					사업자변호		- 1		국적		KR	Q한국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수출자 주소													
생산자 정보]		사출수	저브이	돈이기	1							생산자정보	성 불러 오기
생산자		구글시	o TI	SEVI	사업자변호				국적		KR	Q한국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생산자 주소													
생산장소													
					승품장 별	t행일	년 월	일	9		추가		
송품장 변호		1	눈번		송품	장 번호			송품장 발	행일		관리	
			1		12	3456			2012-12-	-31		삭제	
원산지특례	0			0	해당 없음 / 1	제3국 송종	F장 / 2:전 시	/ 3:연결	원산지증명	병서			12
	1 2 3	상업송 원산지 원산지 원산지 - 세번 - 사원	고필증 장 또는 1확인서 1소명서 1소명서 1변경기 8자매뉴	를 입해 준(CT 등일, 홍 (EV)	신고변호 입력 계약서 자와 수출자가 S할 수 있는 서 H.CTC 등): / 보책자 등) C): 비원산지 산출내역 등)	다른 경우 류 네번 변경 (에 한함) 입증서류(예	원재료 국					

12 ··· 원산지특례(0:해당없음)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원산지특례가 해당되지 않아 0으로 기재 하면 됩니다.

공통사항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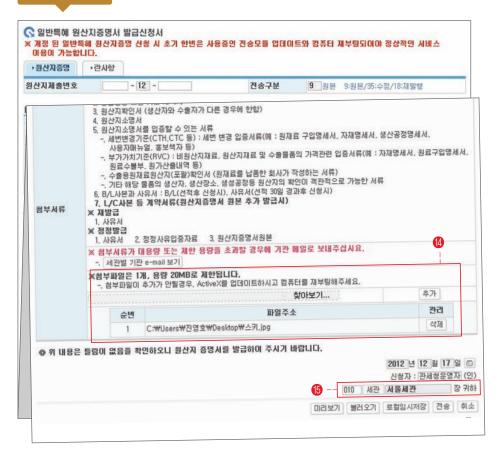
🔞 … 첨부서류 세관 전송

첨부서류 용량이 너무 크거나, 첨부가 불가능한 유형인 경우에는 해당 세관의
 e-mail로 서류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세관별 기관 이메일 주소

46개 세관	과	메일계정 @customs.go.kr
서울	FTA 4과	fta010@customs.go.kr
의정부	-	fta011@customs.go.kr
성남	-	fta012@customs.go.kr
파주	-	fta017@customs.go.kr
동해	-	fta100@customs.go.kr
속초	통관지원과	fta101@customs go kr
원주	-	fta102@customs.go.kr
구로	-	fta130@customs.go.kr
안양	통관지원과	fta131@customs.go.kr
대전	통관지원과	fta150@customs.go.kr
청주	통관지원과	fta151@customs.go.kr
천안	통관지원과	fta152@customs.go.kr
충주	-	fta153@customs.go.kr
대산	-	fta154@customs.go.kr
인천공항	수출과	fta040@customs.go.kr
김포	통관지원과	fta041@customs.go.kr
인천공항 국제우편	우편통관과	fta013@customs.go.kr
부산	FTA과	fta030@customs.go.kr
양산	통관지원과	fta033@customs.go.kr
사상	-	fta035@customs.go.kr
부산국제우편	_	fta037@customs.go.kr
용당	_	fta039@customs.go.kr
마산	통관지원과	fta050@customs.go.kr
거제	통관지원과	fta051@customs.go.kr
사천	-	fta052@customs.go.kr
창원	통관지원과	fta053@customs.go.kr
<u> </u>	-	fta054@customs.go.kr
진주	_	fta054@customs.go.kr
김해	통관지원과	fta140@customs.go.kr
인천	FTA 1과	fta020@customs.go.kr
안산	통관지원과	fta014@customs.go.kr
수원	통관지원과	fta021@customs.go,kr
		fta023@customs.go.kr
	- FTA과	fta120@customs.go.kr
내구 울산	통관지원과	fta110@customs.go.kr
골산 구미	동관시원과 통관지원과	fta121@customs.go.kr
포항	동산시전파 통관지원과	fta122@customs.go.kr
포앙 광주	동관시원과 통관지원과	fta071@customs.go.kr
성수 여수		fta060@customs.go.kr
	통관지원과	
광양 모표	통관지원과	fta062@customs.go.kr
목포	통관지원과	fta070@customs.go.kr
군산	통관지원과	fta080@customs.go.kr
익산	-	fta081@customs.go.kr
전주	-	fta082@customs.go.kr
제주	통관지원과	fta090@customs.go.kr
평택	통관지원과	fta016@customs.go.kr

공통사항 14-15



₩ … 첨부서류 용량 및 유형

 첨부서류는 최대 20M까지 첨부할 수 있고, 첨부가 가능한 유형은 hwp, jpg, gif, zip, pdf, doc입니다.

15 … 신청 세관 선택

○ 신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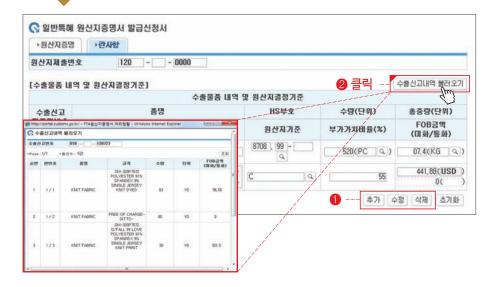
2) 원산지증명 란사항 상세보기

란사항 전체화면





란사항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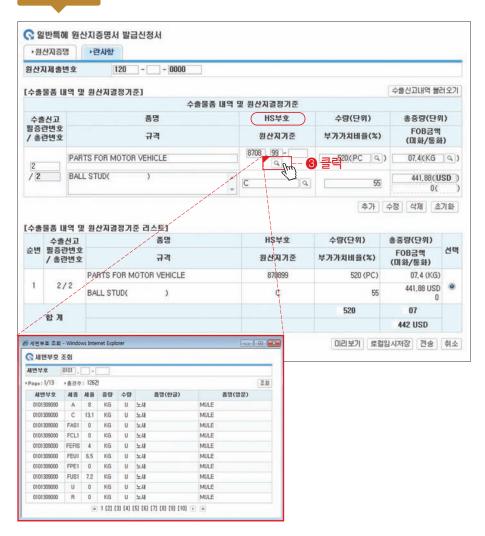
● ··· 수출물품 내역 등록 · 수정 · 삭제

- C/O 신청하고자 하는 수출물품을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물품 내역을 입력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내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할 순번을 선택하면 상단에 해당란이 조회되고 상단에서 수정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 등록된 수출물품 내역 중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할 순번을 선택하면 상단에 해당란이 조회되고 상단에서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2 … 수출신고내역 불러오기

○ 공통사항 중 수출신고번호를 입력한 건은 수출신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품명·규격·수량·단위·FOB금액(미화/통화)을 란별로 조회할수 있고, C/O 신청하고자 하는 란과 품명 등을 클릭하면 입력화면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란사항 3.



❸ ··· HS 부호 입력

○ 수출물품의 HS부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출품목의 6단위 HS부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란사항 4.



4 … 원산지기준

○ 수출물품의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코드 조회화면에서 선택합니다.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기준 표시방법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이하 변경	CTSHS, W
А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В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С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Н	HS변경기준, 미소량제외	De-Minimis
K	부가가치 + 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М	세번변경 + 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 + 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HS명시	W, X, CTC, CTH, CTSH

란사항 5.



⑤ … 부가가치비율(%)

- 협정별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 원산지재료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를 입력합니다.
-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 포함되는 혼합기준인 경우에도 해당물품의 원산지재료의 비율을 입력합니다.
 - 예) HS 4단위 변경 + 부가가치 40% 이상 : M 50%(계산된 부가가치비율)

란사항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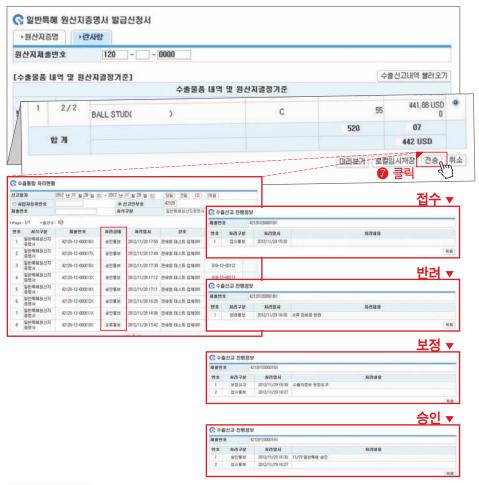


⑥ ··· FOB 금액(미화/통화)

○ C/O상 란별 FOB 금액(미화)은 수출신고서 제33란의 란별 FOB금액(미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C/O 신청하는 품목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란사항 7.



7 · · · 전송

- 원산지증명서 신청을 위한 자료 입력을 완료하고 전송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세관으로 전송이 됩니다.
- 전송한 후에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수출통합처리현황에서 각각의 제출 번호별로 접수, 반려, 보정, 승인, 오류 등의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Part

FTA・岩比等制 社人以高明州

学品和时尚

1) 재발급·정정발급·보정발급 신청하기	72
2) 워사지증명서 춬력하기	78

81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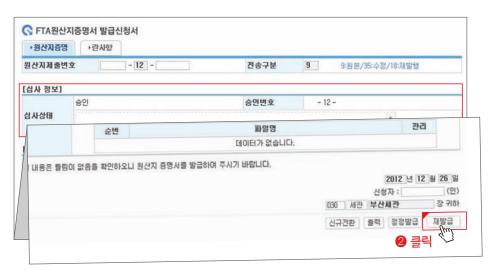
5. FTA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 추가기능

1) 재발급 · 정정발급 · 보정발급 신청하기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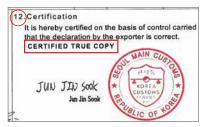
→ 수출통합 처리현황 〉 승인발급된 C/O 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원산지제출변호 - 12 -		전송구분	18 원본	9:원본/35:수정	정/18:재발행	
3 자동성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B 발급 A:발급 B:재발	급 / C:보정발급 / D:정정	발급	신청차수	1		
교 케바그 110 이렇						
₩₽) 재발급 사유 입력					+	
M					2013 년 01 월	12
7					신청자:	
				030 세관	부산세관	- 3
			,	(777477477)	- BIOL HELT	TV A
			미리보기	물러오기	로컬임시저장	전송
			restruct area t	Ec. 27		- Three
			Ultimort	Eciari	클릭	Éfin
			Miles See 1	Ecizyi	클릭	Éfin
→	나스이 중 초려 7	ال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ـ	Mini and	20,271	클릭	- Elpu
₫ 재발급	· - - - - - - - - - - - - - - - - - - -	가능	pilet sec. 1	20,271	클릭	- Efri
		가능	DJU(357)	Eciari	클릭 [_]	- glm
	등명서 승인통보	가능	State	(20,201)	클릭 ↓	- Spin
○ FTA원산지중 제출변호	5명서 승인통보 -13-	가능	Sin and	El el sero I	클릭 ↓	-ghn
C FTA원산지원 제출변호 삼호	F명서 승인통보 -13-(주)				1	-ghr
© FTA원산지원 제출변호 상호 제출세간	F 명서 승인통보 - 13- (주) 서울세간		邓金과	자유무역	1	- Spirit
© FTA원산지원 제출변호 상호 제출세간 수산임시	13- (주) 서울세간 2013/01/09 11:05:03				1	Ju
© FTA원산지동 제출변호 삼호 제출세간 수산임시 산고자 사세함	F 명서 승인통보 - 13- (주) 서울세간		項金班		1	Ju
© FTA원산지원 제출변호 상호 제출세간 수산임시	13- (주) 서울세간 2013/01/09 11:05:03				1	Ju

- C/O 재발급을 위해서는 신청 공통사항 사유란에 사유를 입력하고, 기발급된 C/O(훼손, 인쇄오류 등 회수 가능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 한 · 인도 CEPA는 C/O 제4부본을 당초 C/O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재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번호는 기존과 동일하고, 재발급시에는 전송 구분 18(재발행)으로 전환되며 신청차수는 각 신청시마다 1 차수씩 증가 합니다.
- FTA C/O 재발급 승인 후 출력시에는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추가 되어 인쇄됩니다.
 - 한 · 싱 : 15번 항목, 한 · 아세안 : 12번 항목, 한 · 인도 : 6번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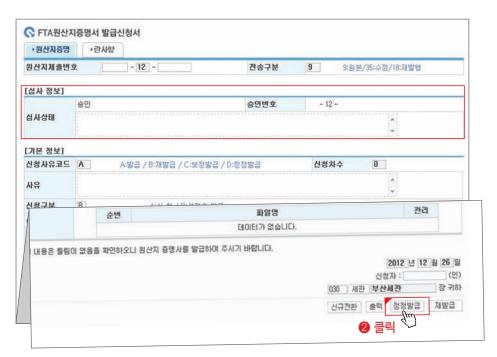


▲ 한-아세안 FTA

정정발급

→ 수출통합 처리현황 〉 승인발급된 C/O 조회 〉 하단의 전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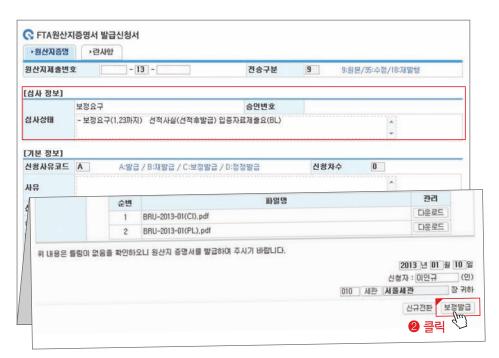


- 정정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번호는 기존과 동일하고, 정정발급시에는 전송구분 35(수정)으로 전환되며 신청차수는 각 신청시마다 1 차수씩 증가 합니다.
- C/O 정정발급을 위해서는 신청 공통사항 사유란에 사유를 입력하고, 사유입증자료, 기발급된 C/O를 첨부하여 진행합니다.

보정발급

→ 수출통합 처리현황 〉보정요구인 C/O 조회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전송 〉 심사 승인







○ 보정발급이란 세관직원이 C/O 신청사항을 심사한 결과 제출된 서류의 보정이 필요한 때 요구하는데, 신청인이 해당 보정사항을 5일~10일의 기간 내에 제대로 이행하면 C/O를 승인발급하게 됩니다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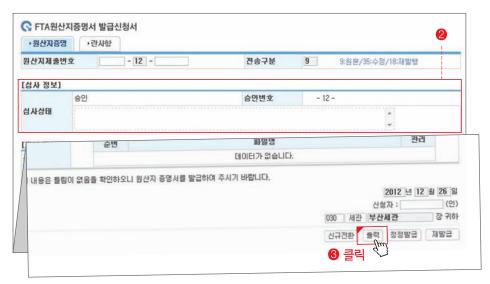
-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 버튼을 클릭하면 제출번호는 기존과 동일하고, 전송구분은 35(수정)으로 전환되며 신청차수는 1 차수씩 증가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출력하기

원산지증명서 출력

→ 수출통합 처리현황 〉 승인발급된 C/O 조회 〉 출력 버튼 완료





○ 발급 신청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직원이 승인하면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출력' 을 클릭하면, 미리보기, 테스트출력, 출력 버튼 등이 나타납니다.
- '미리보기'로 출력하고자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앞면이 총 몇 쪽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테스트출력' 으로 정상 출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상단에 'Test Print' 글자가 표기되고 세관직인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 '출력'을 누르면 3부가 순서대로 출력되며(1번째 클릭시 Original, 2번째 클릭시 Triplicate, 3번째 클릭시 Quadruplicate) Duplicate는 세관 보관용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출력시에는 뒷면에 작성방법(overleaf notes)이 인쇄되어야 합니다.

Original	Overleaf notes
〈앞면〉	〈뒷면〉



▲ 정상발급

▲ 비정상발급

- ※ 원산지증명서 앞면과 뒷면 모두 상방향이 정상, Overleaf Notes가 거꾸로 인쇄되거나, 공란인 경우 유효한 C/O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세관에서 발급된 FTA 원산지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 English 〉 Certificate of Origin 〉 Search for C/O s issued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불러오기로 신고서 작성하기

○ FTA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건이 있는 경우 과거 입력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항목별 자료를 새로 입력하지 않고 C/O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란사항										
원산지제출변호		- 12	•		전송구분	[9 원본 9:원돈	분/35:수정	d/18:재발행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A 발급 A:5	발급 / B:제	발급 / C:보	정발급 / D:정정	발급		신청차수	0			
신청구분	A	Α	:신청 / B:선	적호 방금							
	СВ				L-DL III (1 / 222	-THE					
2000	СВ			X: 수출자 / CB							
TAB		1:	한-마세안 F	TA / G:한-상 F	TA/J:한-인도	CEPA,	/ K:한-페루 FTA	1			
신청인상호			1				사업자번호				
	COLX HIS :	-11		1 유효성 검	111						
AROUN											
수출업체	※ 관세청(세	란)의 원신	!지민증수출	자로 지정된	경우에만 유효	성 검사	내튼을 클릭해	서 사용	가능.		
수출자 정보]									수출자정	ㅂ 불러	971
(고승 자르구 (지출식			사업자	4.5	-		국적	VD.	Q한국		
			VIEW	24			44	M	4 014	CAUCASTO S.	
CHARLES - CO.	7-18-4-18-6	100121011	TOTAL PARTY.			찾아보	וכו		2	추가	
					7101 X					과기	
	ê	변			파일주	소				관리	
6 9 H 8 9		1	오니 원산지	증명서를 발	1347	(78)	С.			관리 삭제	
 위 내용은 2 목록 (국 수용병압 처리연방 건고함자 어써보자등록변호 	를 들림이 없음: 중 선택	1 을 확인하 G - 2000 년		98 78 To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	021	세관	2012 년 10 신청자 : 수원세관 로컬임시저장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 수름등압 처리면등 산고양자	를 들림이 없음: 중 선택	1 을 확인하 G - 2000 년	12 # 30 % ©	당명 건물 15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 수 원세관 물걸임시저장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수표등합 처리현등 건고함자 ⓒ 사업자등록변호	중 선택 8	1 을 확인하 © - ²⁰¹⁰ 년	12 # 30 % ©	98 78 To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2 목록 수표등의 처리면은 선교화자	중 선택 8 200 년 [2 월 0 월 제 제 변호	1 을 확인하 - 2010 년 # 6 사석	12 월 90 월 60 건요연부호 구설 기관열시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대보 보기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수출통합 처리면 건고함자 사업자등록변호 제출변호 Pope: \U3	중 선택 8 2006년 [2월 의 교 제출변호 19999-10-1	1 을 확인하 * 6 사석	12 # 30 % © NACH ** 7 # ** ** ** ** ** ** ** ** ** ** ** ** **	\$8 78 15 9999 FTASCRESA	마바 전체 주시기 (대비 주시기 (대비 주시기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중 수류명합 처리면한 전교함자 ○ 서입자등록변호 제출변호 * Pope: 1/3 * 송전의 변호 사석구분 1 FTAB산지금말 2 FTAB산지금말 2	중 선택 8 2010 년 [12 월 07 월 2010 년 [12 월 07 월	1 을 확인하 # 6 - 2010 년 # 6 사석 # 1 변경등보 # 6 연등 # 2	12 월 30 월 © 보교업부호 구설 처급열시 2011/01/09 1329 2019/12/29 1759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라이 주시기 대보 라이크 호 라이크 호 99-99-10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수표명합 제리연합 선교함자 사업자원칙변호 제출변호 가마여: 1/3 + 송전이 변호 사석구분 「 FTAMECHARS 2 7 FTAMECHARS 3 3 FTAMECHARS 3 3 FTAMECHARS 3	중 선택 8 2010 년 [2 월 01 월 2009 10-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	1 을 확인하	12 월 30 월 @ 보교연부호 구분 처리열시 2011/01/09 1223 2010/12/29 17:99 2010/12/29 17:55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전하여 주시기 전체병호 999-99-10 999-99-10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G 수高等数 처리면 전 コロン	중 선택 8 2006 날 [2 월 07 월 7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1 을 확인하	12 ¥ 10 ¥ © 3329 ± 2 7 M 3319 × 12 3010/12/29 17:99 2010/12/29 17:99 2010/12/29 17:30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전하여 주시기 전체보호 99-95-10 999-96-10 999-96-10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수표명합 제리연합 선교함자 사업자원칙변호 제출변호 가마여: 1/3 + 송전이 변호 사석구분 「 FTAMECHARS 2 7 FTAMECHARS 3 3 FTAMECHARS 3 3 FTAMECHARS 3	중 선택 8 2010 년 (12 월 01 일 2010 년 (12 월 01 일 제출변호 9999-10-10 9999-10-10 9999-10-10 9999-10-10	1 을 확인하	12 월 30 월 @ 보교연부호 구분 처리열시 2011/01/09 1223 2010/12/29 17:99 2010/12/29 17:55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전하여 주시기 전체병호 999-99-10 999-99-10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수용통합 제리면한 전교함 어떤 제공	중 선택 8 2010 년 [2 월 01 월 2010 년 12 월 01 월 2010 년 12 월 01 월 2010 년 12 월 01 월 2010 년 10	1	12 # 10 % © N 20 4 % PM 20 4 % PM 20 1 / 01 / 02 1 2 2 2 2 2 2 2 1 / 01 / 0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중 선택 8 200 월 IZ 월 07 일 제휴변호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의 9999-10-10	# 2010 년 # 2010 년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12 版 90 版 回 東西学文 フ修 第13 以 回 第13 以 回 第14 以 回 第15 以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전환호 전환호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② 목록	중 선택 2010 년 [12 월 01]월	# 2010 년 # 2010 년 #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4	注量 10 位 12 日 20 位 2 日 20 位 17 50 日 20 日 17 50 日	[당임] 건설 [15] 9999 FTA원산자중앙시 설호	전환명 주시기 전환호 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999-99-10	바랍니	021	세관	신청자: 수원세관 클럴임시저징	삭제 D 월 10 전송	장 7

불러오기로 신고서 작성하기

❸ C/O 신청자료 내역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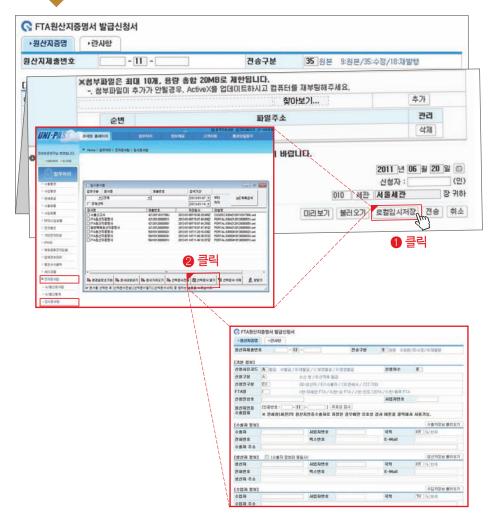
원산지제출변	· Σ	- 12 -		전송구분	9	9:원본/35:수정/	18:재발행	
심사 정보]	승인			승인변호	030 - 12 -			_
십사상태	85			9557	030 = 12		33	
31101						,		
기본 정보]								
신청사유코드	A	A:발급 / B:7	대발급 / C:보정발	급 / D:정정발급	신청차	수 0		100
사유								
44							*	
신청구분	В	A:	신 청 / B:선적후 팀	발급				
신청민구분	EX	GE):생산자 / EX:수월	자 / CB:관세사 / ZZZ:기	IEI-			
		세관별 기관 e-ma						
	×a!	부파일은 최대 10	0개, 용량 총합 2	OMB로 제한됩니다.			1 200 200	
		순변		파일명			관리	
				데이터가 없습	LICH.			
01.111.0.0.8	EPINI OI O	8 #HOI-LOI I SI	사지 주면서를 받는	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내용근임	BROI WE	를 적단하고다 전	EN GOME E				2012 년 12	월 26 章
						۵	성자:	(0
						030 세관 부	산세관	장귀경
				4 신규전환	==1 .//	신규전환 출력	적정발급	재발급

6 C/O 신규번호 생성



○ C/O 신청서 작성 → '불러오기' 버튼 클릭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료 조회 → C/O 신청 제출번호 선택 → 원본 조회자료 확인 → 하단의 '신규전환' 버튼 클릭 → 신규 C/O 신청서 번호 생성을 위해 채번 버튼 클릭 → C/O 신청 작성

임시저장



-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입력하고 있는 신청서 작성사항이 내 컴퓨터에 XML로 임시저장됩니다.
- 임시저장된 문서는 전자문서함〉임시문서함 기능을 활용하여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수/발신 현황 조회



○ 업무처리〉수출통관〉전자문서함〉수/발신문서함에서 신청인이 수신/발신한 전자문서의 목록을 조회하여 발신한 문서의 원문보기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Part

각종 원산지증명서 서식보기



1)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86

2)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 102

6. 각종 원산지증명서 서식보기

1)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Reference No.: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2. Importer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3. Departure Da	ate:		4. Vessel's Nam	ne/Flight No:.			
5. Port of Disch	arge and Route:						
6. Country of Fi	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	rigin: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Goods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5. Certification				
above details a	ned hereby dec and statements a ere produced in_	re correct; tha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s	(Country) By comply with pecified for these PORE FREE TRADE goods ex	e goods in the	Place and Date:				
	Importing Country	· ·	Signature and S	Stamp of Certifying	a Authority		
Place and Date	. ,		S.g. Mara and C	or connym	5 . Islanding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작 성 요 령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Exporter(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2. Importer(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로 적습니다.
-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 로 적습니다.
-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 10. HS No.(품목번호):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WO" (Wholly Obtained Rule)
 -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CTC"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VAC" (Value Added Criterion)
 -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CTC & VAC"
 -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OP" (Outward Process)
 -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Gaesung Products"
 -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De Minimis"
 -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s"
 - ※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 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08.7.15〉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	cate/Ti	riplicate)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2. Goods C address,	onsigned to(Con: country)	signee's name,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known)	transport and ro	oute(as far as	□ Pr AS	SEAN Free Tra	tment Given Unde Area Prefer	rential Tariff	
Vessel's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ate reason/s)gnature of Autl	horised Signato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ng goods(including quawhere appropriate anumber of the important)	on of antity and HS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signature of auth	Country) nd date, norised signatory		Ce	ate, signature a	ity	
13. ⊔ Inird	Country Invoicing	g 🗆 E	xhibition	1	□ Back-to-	Back CO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거을 츳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V"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9.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 도 적습니다.
 -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 (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 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V"표시를 합니다.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V"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Y" 표시를 합니다.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란에 "Y" 표시를 합니다.

[별지 6호의6서식] 〈신설 2009.12.31〉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address, country, e-		Reference No.:			
address, telepho	ne number, fax numl	oer)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c	ptional)		ORIGIN		
			(0	Combined Declaration as	nd Certificate)	
			Issue	d in(Co	ountry)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	otional)	5. For O	fficial Use		
Means of transp Departure date: Vessel's name/A Port of Discharge	···-·-·	al)	6. Rema	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and va (FOB)	0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hereby declares statement are correct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Country)					
specified for these	ly with the origin requ goods in the KOREA Economic Part goods exported to	A-INDIA				
	(Importing Country)					
Place an	d date, signature of pris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 invoicing(name, add	dress, cou	ntry)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Y"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면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면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면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生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 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V**"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의8서식] 〈신설 2011.7.29〉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Issued in (see Overleaf Instruction)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5. Remar	ks:		
Port of loa Port of dis	ading: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 (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³,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2 Declaration	on by the exporter:		13	13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Importing country)						
	nd date, signature of a signatory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장소 및 날짜, 수임기관의 서명 및 소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증명서 번호: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라고 적을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동일)이라고 적습니다.
-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폐루와의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6. 제6란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으며, 일련번호는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7. 제7란에는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BULK" (포장되지 않음)라고 적습니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 (별 3개) 또는 "\"(사선)을 더합니다.
- 8. 제8란에는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 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 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¹⁾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 (공제법인 경우) 또는 "BU" (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
- 10. 제10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 11. 제11란에는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 13. 제13란에는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의 권한있는 사람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2.31〉

(국문 앞쪽)

원 산 지 소 명 서										
	상	호				사업자등록변	호			
1.수출자	대표	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	(전자주소)								
	상	호				사업자등록변	호			
2.생산자		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	(전자주소)								
	- ,			물 품	· ·					
3.품명/ㅠ		-) -))	707 ()	77 7777 1		4.HS No.				
5.물품가	격	가격조건 금 액	FOB (),	Ex-Worl	ks ()	6.원산지 결정	정기준			
7.주요생	산공정									
		•								
			원	재 료	명 세 서					
8. 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구 격	13.공급자		
0. 00		7./11312 0	10.110		11, 007	수량	가 격	(생산자)		
	1	N.		난지재료(
	14. 합	계	비원선	난지재료(
			 원 산 지	합계						
	N - 1 1 2 2	111				토 	222			
		충족여부	예 아니			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 예□ 아니오□				
		충족여부	예 🗌 아니	오□	(부가기	가치비율 :	%)			
	변경기준: 동시 적용	과 부가가치 품목	예□ 아니	오□	19.최소기	준 적용여부	예	예□ 아니오□		
20.누적기]준 적용	여부	예 🗌 아니	오 🗌	21. 역외가	공기준 적용여	겨부 예	□ 아니오□		
22.직접운	우송 여부		예□ 아니	오□	23.기 타		예	□ 아니오□		
24.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 · 제출합니다										
		. , ,. 작 성	자 :		(서명)					
		직								
		· 상호및								
		작성 일								
						04	0007 /AIE	P요지 5/44/(제항요프)\		

(국문 뒤쪽)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수출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산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 Works에 "○" 표기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 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료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 산 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 · 주소 · 전자주소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23	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를 표기합니다.

														(01	느 ㅍㄱ/
			Origi	n \	⁄e	rific	ati	01	n Que	stionna	ire				
		Name of	Company							Business Nu	mber				
1.Expo	rter	Represer	ntative		Telephone & Fax No.										
		Address													
		Name of	Company							Business Nu	mber				
2.Produ	ucer	Represer	ntative		Telephone & Fax No							о.			
		Address										·			
				De	esc	riptio	n of I	Ex	ported Go	ods					
3.Name	e & Mo	del								4.HS No.					
5.Value	e		Term of F Price	rice	F	OB (), E	X-V	Vorks ()	6.Origin Crite	eria				
7.Desci Produ		of Process													
					l	List o	t Mat	er	ials(Parts)						
8.S/N	9	.Material	Name		10	.HS N	Э.		11.Origin	Volume 12.1	ost 13. Supplier			plier	
					(Origin	ating l	Mat	terials						
	14. T	otal Cost			Non-Originating Materials				1 / -						
							Tota	Total							
						Origi	n De	ter	mination	•					
15.Who	olly Ob	tained Cı	riterion	Yes		No			16.Tariff	Shift Criterion		Yes		No	
17.Valu	ıe-adde	ed Criterio	on	Yes		No			(Ratio	: %)					
		Criterion		Yes		No			19.De Mi			Yes	; [No	
20.Accı				Yes		No	<u> </u>	21 Outward Processing				Yes		No	
		signment		Yes	_	No							No		
24.Orig	gin Dete	erminatio	n	Qua	ılifie	ed ()	No	n-Qualified ()			
respor	nsibility	of prov	ing such re	prese	enta	itions.	I agre	e t	to maintain,	naire is true and present sponse to this	upon re	equest	, all		
	Name :								(Signati	ure)					
	Title :														
Company & Address:															
Date :															
(Doci	umenta	ry Evidei													
1. Invoice ()								2. I	List of Mater	ials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iments, if I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영문 뒤쪽)

	In:	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Field		
1	Exporter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o., and address of the Company including the email address of the actual exporter of the concerned item.
2	Producer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umber, and address of the Company of the actual producer/ processor/ manufacturer in the exporting country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3	Name/Model	Specifications including item name, model name, brand name, and size eg, Cell phone; Samsung MX-2700; Anycall The name of the exporting item should be the same as the name in the invoice.
4	HS, No.	Six-digit HS cod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5	Value	O Terms of price: mark 'O' in FOB, if it is 'free on board', mark 'O' in Ex-Works, if it is 'ex-works' or 'ex-factory' O Price: Write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Currency should be the same as that in the invoice.
6	Origin Criteria	 Write the criterion applied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pursuant to the Law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eg. Writ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when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 applied; 'Value Added Criterion' when Value Added Criterion is applied; 'Combined criterion' when combined criterion is applied, upon which both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d Value Added Criterion should be fulfilled.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Describe the each step in the process in a sequential order.
8	Serial No.	Serial number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9	Material Names	Name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10	HS No.	Six-digit HS codes of the materials.
11	Origin	Producing country of the materials.
12	Price	 Volume and cost of the raw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13	Supplier	\circ Name of Company, address((including the e-mail address), Telephone & Fax No.
14	Total Cost	 The sum of the cost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and the sum of the cost of the non- originating materials as well as the total cost of the raw materials.
15~23	Origin Criteria	 ○ Check whether the concerned export item is qualified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eg, mark 'Yes \(\bigver' \), if qualified; mark 'No \(\bigver' \), if not qualified ○ If section 19, 20 & 21 are marked 'Yes', further documentary evidence should be attached as annexes
24	Origin Determination	 Mark 'O' in Qualified if the origin determination can be made with the Cost & Production Statement; mark 'O' in Non-Qualified if not.
1	cumentary Evidence	 Mark 'O' if the documentary evidence is attached to the Cost & Production Statement other related documents can be noted in the Other Documents section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2〉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210mm×297mm[백상지 80g/m⁻(재활용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Y표시를 합니다. (앞쪽)													
		상호	<u> </u>					사업	사업자등록번호				
1.공급		대표	자(성명)					전화	/팩스				
^	자 주소/E-mail								수출자 인증반	호			
		상호	<u>.</u>					사업	자등록번호				
2.공급		대표	자(성명)					전화	/ 팩스				
Τ.	ŀ		:/E-mail										
						7787							
						공 급 물 품	명 세						
3.연번	4.적8 협	용대상	5.품목번호 (HS 6단위)	6.품명· 1	구격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 ⁷ 기준 충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u> </u>	<i>6</i>	(110 001)			일이기正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자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작	성 :	자 :	(서명 또는 인)			
							직	2	위 :				
							상	호및주	호소 :				
							작	성 일 :	자 :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항목 기재내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 (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3	연 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각	적습니다.							
4	적용대상 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5	품목번호 (HS 6단위)	○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6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7	원산지 결정기준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 Other							
		아, 기타기준	- Ou let							
8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Y] 충족"에 표시	 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적	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2, 12, 01 - 2013, 11, 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2.22〉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쪽)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학인기간		Ę	4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	
		2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_ [2	주 소									
3, 공i 하는 :		대표	자(성명)									
이⊏ /	^r	전:	화/FAX									
		Е	-mail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2	 주 소					'				
4. 공급	- 1	대표	자(성명)									
받는	사		화/FAX									
		Е	-mail									
					5.	-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5	락번호	(HS 6단-	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6. Ш	원		세				
공급물	물품 연번 연번		퓯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 · 규격	수량 및 단위 7		가격	비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7. 작성자 성명	상호
작성자 서명	직 위
(년) (월) (일) //	전화번호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 (재활용품)]

	작성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내 용				
1	발급번호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제조포괄 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	공급하는 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4	공급받는 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5	공급물품 명세	○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 · 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기재)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6	비원산지재료 명세	○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ㆍ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적습니다.				
7	작성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상호,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호 ·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2)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의2 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onsigned to (Cor , country)	nsignee's name,		CERTIFIC. (Combined dec	ATE OF ORI		
					otes overleaf	ountry)	
3. Means o	of transport and ro	oute (as far as known)	4	. For official use			
5. Tariff Item No.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 No.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Instru- ction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The deligion of the second of	2. Declaration by the undersigned geetails and statement pods were roduced in	(Country) omply with ed for those of preference	the origin goods in the ses for goods	
Place an certifying a		ure and stamp of		lace and date, gnatory	signature of	authorized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Instructions for filling the Form⟩

- The main conditions for admission to preference are that goods sent to any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 (i)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nd
 - (ii)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specified for those goods by the countries of destination.
- 2. If the goods qualify under th origin criteria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e form as below:

Classification of goods by types of origin criteria	Indication to be made in Box 8 of the form
Goods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Р
Goods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value added	Y followed by the value or materials imported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Y less than 50%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a change in HS heading or other origin criteria	X followed by the HS heading No.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X 97.06
Goods satisfying two origin criteria	Example: X 84.05 Y less than 40%

-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 4. Language, description of goods, etc. In making out th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English, French or Spanish be used, taking into account the acceptability of the language in the importing country. Entries on the form should be typed or hand-written: in the latter case use ink and capital letters. Any unused space should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 impossible. Any alteration must be endorsed by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 5. Procedure for claiming preference. A declaration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prepared by the exporter of the goods and submitted in duplicate to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of the country of exportation, which will, if satisfied, certify the top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return it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importe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will itself keep the second copy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별지 제1의3 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unctional business mans address sounts)				Reference No.: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ed in			
					•••••	•••••	
					country)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	te:					
5. Tariff item number of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nd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It is carr	Certificate hereby certifie ied out, that the orrect.			
Importing Country)				ce and date, if		d Stamp of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APTA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I.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생산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 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탁송품 내의 개별상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II "라" 기재방법

1란 : 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2란: 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3란: 공용란 -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둔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를 표기한다

5란: 세번-개별품목의 HS 4단위를 표기한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생산품을 분류 하는데 도움이 된다.

8란: 원산지 기준 - 특혜 생산품은 아시아-무역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픔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않은 생산품은 제3조 또는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 가) 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A"를 기재한다.
- 나) 불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B" 50%)
-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뒤에는 협약참가 수출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위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C" 60%)
-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9란 : **총증량 또는 기타 수량** -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생산물의 총증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하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11란 : 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 일 수 있는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 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이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 되어야 한다.

12란: 증명 - 증명기관이 이 란에 증명한다.

〈별지 제1의4 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Form A)

1. Good co address,	nsigned from (Exp	orter's business name,	Re	eference No. 번호		
수출재상사명, 주소 및 국명)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ブ	#도국간 특혜무역 Combined decl		
address,	onsigned to (Cons country)	ignee's name,			aration and ce 및 증명 겸용)	ertificate)
수입자(상/	사명, 주소 및 국명)			Issued in	(country)	
					s overleaf 뒷면침	소
3. Means c 운송수단		ute(as far as known)	4.	.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 명)에서 생산되고,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에 합 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importing country)			lt ou	. Certificate 증명 is hereby certified, c ut, that the declaratio 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기	n by the export	ter is correct.
	date, signature of 년월일, 서명권자의 /	authorized signatory 서명	au	ace and date, signa uthority 명발급지, 발급년월일,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 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수출국에 대한 GST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 (2) GST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T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TP원산지규정 제2조(완전생산기준) 또는 GST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 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 또는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 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를 기재한다.
-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를 기재한다. "B"뒤에는 GSTP비참가국 및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B" 50%)
 - ② 규정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C" 60%)
 - ③ 규정 제IO조(최빈국특혜비율)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별지 제1의5 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Form A)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번호			
수출재상사명, 주소 및 국명)					ystem of Prefe cate of Origin	erences
			-	특혜관세· (Combined decl	용 원산지증명	
address,	onsigned to (Cons country)	ignee's name,		(신고	및 증명 겸 용)	,
수입자(상/	사명, 주소 및 국명)			Issued in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3. Means c 운송수단	of transport and rou 및 경로	ute(as far as known)	4.	,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s of packages: es Description of good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th de goor B arss 일는	nd that they comply pecified for those pecial Preferences f 반특혜관세규정상 하기 : 것을 신고함 (impo	eby declares thats are correct in 용이 정확하며, 모 country) with the origing goods in the or goods expor 수입국의 원산지	nat the above : that all the 든 물품이 (국가 requirements Generalized ted to 기준에 합치한다
authority	date, signature a	nd stamp of certifying 기관의 서명 및 소인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특혜관세용(GS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수출국에 대한 GS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 (2) GS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3) GS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P원산지규정상 (완전생산기준) 또는 GS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부가가치기준) 또는 (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 획득품이다.

-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 또는 "P"를 기재한다.
-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 또는 "Y"를 기재한다. "B"뒤에는 우리나라산이 아닌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B" 50%)
 - ② 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 뒤에는 수출품 의 당해 GSP공여국 및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C" 60%)
 - ③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제8란에 "W"를 기재한다.
 - ④ 규정 특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를 기재한다.

〈별지 제1의6 서식〉(개정 2008.12.9)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행)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원산지증 CERTIFICATE C	
3. 생산자(상호, Producer(n	주소, 국가) ame, address, country)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	roduction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	ute
7. 연번 Item number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 Descripti	량 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고 (Othe	er information)		상기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above-mentioned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확인	인 Stamp	증명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97·m(일반용지 60·α/m(재활용품)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¹(재활용품))

▶ 주요기관 연락처

기관명	담당부서	연락처	인터넷 사이트		
	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84, 3226	http://fta.customs.go.kr		
관세청 -	고객지원센터	1577-8577	http://call.customs.go.kr		
	고적시원센터	1377-0377	Tittp://caii.custorns.go.ki		
기관명	C/O 발급 담당부서	연락처	대표 이메일		
서울본부세관	FTA 4과	02-510-1864	fta010@customs.go.kr		
의정부세관	-	031-540-2622	fta011@customs.go.kr		
성남세관	-	031-697-2593	fta012@customs.go.kr		
파주세관	-	031-934-2807	fta017@customs.go.kr		
동해세관	-	033-539-2664	fta100@customs.go.kr		
속초세관	통관지원과	033-820-2124	fta101@customs.go.kr		
원주세관	-	033-811-2855	fta102@customs.go.kr		
구로세관	-	02-2107-2522	fta130@customs.go.kr		
<u> </u>	통관지원과	031-596-2052	fta131@customs.go.kr		
대전세관	통관지원과	042-717-2225	fta150@customs.go.kr		
청주세관	통관지원과	043-717-5713	fta151@customs.go.kr		
천안세관	통관지원과	041-640-2354	fta152@customs.go.kr		
충주세관	-	043-720-2004	fta153@customs.go.kr		
대산세관	-	041-419-2715	fta154@customs go kr		
인천공항본부세관	수출과	032-722-4195	fta040@customs.go.kr		
김포세관	통관지원과	02-6930-4919	fta041@customs.go.kr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032-720-7426	fta013@customs.go.kr		
부산본부세관	FTA과	051-620-6637	fta030@customs.go.kr		
양산세관	통관지원과	055-783-7366	fta033@customs.go.kr		
사상세관	- 80.46-4	051-793-7707	fta035@customs.go.kr		
부산국제우편세관		055-783-7421	fta037@customs.go.kr		
용당세관		051-793-7173	fta039@customs.go.kr		
마산세관	통관지원과	055-240-7023	fta050@customs.go.kr		
거제세관	통관지원과	055-639-7518	fta051@customs.go.kr		
사천세관	<u> </u>	055-830-7805	fta052@customs go kr		
창원세관	통관지원과	055-210-7622	fta053@customs.go.kr		
통영세관	<u> </u>	055-733-8007	fta054@customs.go.kr		
진주세관		055-750-7907	fta056@customs.go.kr		
김해세관	통관지원과	051-899-7233	fta140@customs.go.kr		
인천본부세관	FTA 1과	032-452-3164	fta020@customs.go.kr		
안산세관	통관지원과	031-8085-3872	fta014@customs.go.kr		
수워세관	 통관지원과	031-547-3945	fta021@customs.go.kr		
부평세관 부평세관	- -	032-509-3711	fta023@customs.go.kr		
대구본부세관	FTA과	053-230-5254	fta120@customs.go.kr		
울산세관	통관지원과	052-278-2257	fta110@customs.go.kr		
구미세관	통관지원과	054-469-5613	fta121@customs.go.kr		
포항세관	통관지원과	054-720-5713	fta122@customs.go.kr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fta071@customs.go.kr		
여수세관	통관지원과	061-660-8633	fta060@customs.go.kr		
광양세관	통관지원과	061-797-8424	fta062@customs.go.kr		
목포세관	통관지원과	061-460-8516	fta070@customs.go.kr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063-730-8711	fta080@customs.go.kr		
의산세관	O L: \ C H	063-720-8906	fta081@customs.go.kr		
적근세년 전주세관	_	063-710-8960	fta082@customs.go.kr		
제주세관	통관지원과	064-797-8812	fta090@customs.go.kr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3	fta016@customs.go.kr		
경작극을세단	공단시전되	001-0004-1040	itau iuwuustuins,yu,N		

FTA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 · 발급 손쉽게 따라하기

발 행 일 2013년 3월

발 행 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편
 집
 박철구 FTA 집행기획관

 안병옥 FTA 집행기획담당관

이영달, 김희정, 유성우, 정진호, 반재현, 박노명, 박양희

만 화 이향숙

인 쇄 처 디자인아람 Tel. 042) 625-2771

이 책의 저작권은 관세청에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